

##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· 삭제요청서

※ (\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신고 · 삭제 요청인	성명(기관 · 단체명)*	생년월일(기관 · 법인번호)
	전화번호(휴대폰)*	전자우편 주소*

불법촬영물등 의 유통현황*	※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되, URL 기재가 어려운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)
-------------------	--

요청내역	[ ] 유통 신고    [ ]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   ※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중복가능).
------	--

신고 · 삭제 요청 사유*	[ ] 불법촬영물	[ ]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<b>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</b> 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
※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중복가능)	[ ] 허위영상물	[ ]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(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로서 <b>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· 판매 · 임대 ·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·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</b> 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)
	[ ]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	[ ]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※ "성적행위"란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, 신체를 접촉·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.
	[ ]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	[ ]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을 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

※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·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·제공될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· 삭제요청을 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고 · 삭제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사업자 명)

귀하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, 생년 월일	신고인 확인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	3년

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동의( ), 동의하지 않음( )

신고·삭제요청인(대표자) 성 명  
(기관·단체명)

(서명 또는 인)